

□ 病院税務相談 □

상담 : 鄭 基 善 <公認会計士 · 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연구위원>

【質疑】 최근에 리스(lease)에 대한 法人税 基本通則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S병원>

【答】 (1) 리스에 대한 会計処理와 稅務上의 規定에 관하여는 1983년 12月号 세무상담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稅務當局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相談者가 業界의 慣行과 그 동안의 經驗을 토대로 답변하였습니다.

다행히 1985년 1월 1일에 두가지 基本通則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분명하였던 점들이 거의 대부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먼저 金融리스(financing lease)와 運用리스(operating lease)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基本通則(2 - 3 - 56.....9)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金融리스는 다음의 각号에 해당하는 리스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運用리스로 구분합니다.

① 리스期間終了時 賃借人에게 리스物件의 所有權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金額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② 리스期間 종료시 리스物件을 리스實行日 현재 取得価額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權利가 賃借人(lesor)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同取得価額의 10% 미만을 再리스 元金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權利가 賃借人에게 주어진 경우

③ 리스期間(재리스期間분 포함)이 固定資產 耐用年数表(別表1 및 別表2)에 의한 리스物件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金融리스가 運用리스와 기본적으로 다른 点은 運用리스는 리스会社가 리스될 가능성이 높은 裝備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리스를 원하는 자에게 리스하여 주는데 반하여, 金融리스는 비교적 리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고 또한 한 번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에 대하여 리스会社가 銀行과 같은 역할도 함께 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運用리스는 순수한 運用에 따른 리스料를 부담시키는 데 비해 金融리스에서는 運用에 따른 리스料외에 利子費用도 포함시켜 부담시 키고 있습니다.

(3) 다음에 会計処理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金融리스의 경우 賃借人인 病院에서는 当該 리스物件의 리스實行日 현재의 取得価額 상당액을 賃貸人(예, 銀行등)으로부터 차입하여 同 리스物件을 구입(설치비등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所有資產과 동일한 方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資產의 감가상각비와 代金決済條件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料中 차입금에 대한 利子相當額을 각 사업연도所得金額計算上 捐金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同 利子相當額은 金融保險業者에게 지급하는 利子로 보아 利子所得에 대한法人税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賃借人이 捐金에 산입할 利子額은 리스實行日(리스契約條項에 따라 리스料가 최초로 起

算되는 날) 현재의 리스契約과 관련하여 貸借人이 貸貸人에게 契約上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料金額(基本리스료)中 利子率法에 의하여 계산한 利子相当額으로 하여, 리스實行日 이후에 발생한 利子率등 基本리스료 산정요소의 變動에 따라 店本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差額리스료(調整리스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利子率法에 대하여는 基本通則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나 「리스會計處理基準」(証券管理委員會 제정, 1985년 1월 1일) 제 9 조 제 2 항에 의하면『利子率法이라 함은 每리스료 支給期間 初日 현재의 金融리스債權殘額에 대하여 每리스료 支給期間마다 収益率이 一定하여지도록 利子額을 산정하는 方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83년 12月号의 “月리스료의 利子와 元金計算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 運用리스에 대한 会計처리는 간단합니다.

賃借人の 경우에 있어서는 代金決済条件에 따라 지급할 基本리스료와 調整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산입하면 됩니다.

外貨로 표시된 리스契約의 경우 基本리스 料는 外貨金額을 기준으로 하므로 換率에 따라 변동된 리스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만약 貸借인이 리스物件 取得価額의一部를 부담할 경우에는 이를 先給費用으로 계산한 후 리스期間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5) 金融리스와 관련하여 貸借人인 病院이 外貨債務로 계상한 리스負債에 대한 評価差損益 또는 償還差損益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金融리스의 경우 貸借인이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데 리스期間이 당해 리스資產의 耐用年數를 초과하더라도 事業別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리스期間이 耐用年數보다 짧은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역시 耐用年數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金融리스의 경우 리스實行日 이후 리스物件에 직접 관련된 保險料, 修繕料, 稅金과 公課 등으로서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金額은 발생시에 費用으로 처리하도록 「리스 會計處理基準」 제17조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會計處理는 단순한 것이 아니므로 会計處理前에 거래상대방인 리스会社와 상의하여 諮問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83年 12月号 相談에서는 金融리스의 경우 会計處理方法에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리스 會計處理基準」 제16조에 의하면 “리스契約上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線額에서 리스實行日 이후에 속하는 利子相当額을 차감한 금액을 資產과 負債로 각각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가지 方法中 첫째 方法에 의하여 会計處理하여야 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